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“비영리민간단체”라 한다)가 추천하는”을 “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의 총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7조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

제61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특수작전 및 대테러 전담부대 전투원이 사용하는 장비·물자를 구매하는 경우

제71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연구개발”을 “국내구매와 연구개발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 업체주관 연구개발단계에서 형상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

제71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연구개발”을 “국내구매와 연구개발”로 하고,

같은 호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라목(종전의 다목) 중 “품질보증”을 “품질보증(「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시제품이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 업체주관 연구개발단계에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

9. 법 제48조제3항 및 이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 가능업체 유무 등 조사·분석 업무
별표 2 제1호나목 중 “가목에 따른 기간”을 “가중처분 적용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

별표 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“비영리민간단체”라 한다)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. ③ 삭제 ④·⑤ (생략)	제5조(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 <u>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1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1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위원의 총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
제27조(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⑦ (생략)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	제27조(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-----

같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⑨ (생략)

제61조(계약의 종류·내용 및 방법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르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④ (생략)

제71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

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.

1. (생략)

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

⑨ (현행과 같음)

제61조(계약의 종류·내용 및 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특수작전 및 대테러 전담부대 전투원이 사용하는 장비·물자를 구매하는 경우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1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
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의 관리
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
업무

가.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
의 연구개발, 양산 및 운용
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
등 형상의 관리에 관한 기
술지원

<신 설>

나. (생 략)

3.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
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
업무

가.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
의 연구개발, 양산 및 운용
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
등 품질보증

<신 설>

나. (생 략)

2. -----

--

가. -----
- 국내구매와 연구개발--

나.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
업체주관 연구개발단계에
서 형상의 관리에 관한 기
술지원

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

3. -----

--

가. -----
- 국내구매와 연구개발--

나.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의
업체주관 연구개발단계에
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
보증

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

다.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
있는 무기체계 및 방위사
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
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
발급 등 품질보증

라. ~ 사. (생략)

4. ~ 8. (생략)

<신설>

라. -----
- 품질보증(「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」 제3
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계
개발단계와 양산단계를 통
합하거나 시제품이 전력화
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마. ~ 아. (현행 라목부터 사
목까지와 같음)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법 제48조제3항 및 이 영 제6
4조제2항에 따른 방산분야별
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
생산 가능업체 유무 등 조사
· 분석 업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전력정책과(구)	
연 락 처	(02) 748 - 5613